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조성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○ 청남대 입장료(할인대상, 연령기준)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청남대 순환버스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남대 관리·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아동 입장료 면제대상 명확화(안 제4조, 별표 1)

○ 입장료 할인대상 추가(안 제4조)

-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

-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○ 순환버스 운영 규정 신설(안 제18조)

○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- 관람자 →관람객(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11조, 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청남대의 입장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순환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, 제11조제3항, 제12조제1항의 “관람자”를 “관람객”으로 개정하였으며,

○ 아동 입장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던 “7세 이하의 아동”을 “7세 이하의 미취학아동”으로 개정하였으며,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 및 제6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입장료 할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청남대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.

○ 또한, 제18조를 신설하여 축제기간 등에 청남대 방문객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이를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청남대 근교 및 진입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순환버스 운영에 있어 세부 운영지침 및 안전수칙 등을 마련하고,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